



國際動向

# PCT, 1月 24日 發効

特許協力條約(PCT)은 지난해 12月 24日에 英國이 條約批准書를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 寄託함으로써 自動的으로 그 1個月後인 지난 1월 24일에 發効하였다. 따라서 PCT의 出願業務受理등 諸般準備業務는 加盟國總會를 거쳐 PCT特許廳이 設置되는대로 오는 6월 1일부터 開始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PCT會員國들은 4월 10일부터 제네바에서 條約發効 後의 最初締約國 總會를 열고 出願受理官署, 國際調查機關國, 際豫備審査機關出願料金 등을 決定하게 된다.

현재 PCT의 加盟批准國은 16個國이며 日本도 特許法の 改正과 同時에 오는 가을쯤에는 가맹할 準備를 서두르고 있다.

이로써 國際工業所有權機構로서는 既存機構以外에 지난해 10월 7일에 발효한 유럽特許條約(EPC)과 더불어 2大 國際實務條約機構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미리 닦치는 工業所有權의 國際化趨勢에서 벗어날 수 없는 一大轉換期에 直面하고 있다.

PCT는 1966년 9월에 公업소유권의 保護에 관한 파리同盟(萬國工業所有權保護協約)의 執行委員會에서 世界各國 共通의 出願洪水로부터 出願人의 負擔을 덜고 各國 特許廳의 勞力을 輕減하는 方法이 必要하다는 提案에 따라 國際事務局이 이른바 PCT條約을 草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부터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을 갖고 各種國際會議에서 審議를 거듭하여 1970년 5월에는 워싱턴에서 各國 政府間外交官會議를 열고 同草案을 附議한 끝에 6월 19일에 合意에 이르렀으며 이때 20個國이 署名하였고

同年末에는 모두 35개국이 서명하였다.

이 協약의 발효조건은 8개국이 비준하되 그 가운데에는 이른바 하이·페이턴트·오퍼레이션 國으로 통하는 一定數 以上の 多特許出願 4個國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美國, 西獨, 스위스에 이어 지난해 10월 24일에 英國이 WIPO에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그 다음 날인 25일에 프랑스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PCT는 발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今年에는 20餘國이 비준서를 기탁하게 될 것이며 日本도 모든 準備를 갖추고 있다.

PCT의 업무는 EPC와는 달리 節次의 統一化를 主眼으로 하고 있다. EPC는 同一審査機關이 實體的인 特許要件까지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PCT는 締約國의 國民 또는 居住者는 自國 또는 加盟國의 特許청에 一定한 方式에 따라 國際出願을 해 놓고 그 書類에 自己의 權利를 取得하려는 나라들을 指定하면 指定國家에는 同時出願과 同一한 效果가 發生하게 된다. 그래서 出願節次가 簡素화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출원은 國際調查機關에서 新規性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그 국제조사기관이 使用하고 있는 言語로서 記載해야 하며 韓國이 PCT에 加盟되었을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우리는 韓國語로 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은 日本이 우리보다 먼저 가맹하여 東南亞地域에서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로 極力推進하고 있는 형편이다.

出願受理官署는 出願日로부터 13個月以內에 국제출원의 記錄原簿를 WIPO에 提出하고 그 寫本을 국제조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를 접수

—特許制度의 國際化 加速—

한 국제조사기관은 接受日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출원에 대하여 調査活動을 展開하고 그 結果를 출원인과 WIPO에 報告하게 된다. 조사에는 最小限 美, 西獨, 英, 佛, 蘇, 스위스, 日本(日本은 加盟後)등 7개국의 1920年以後에 發刊된 特許文獻등을 조사해야 한다.

調査報告書에는 이들 特許文獻만을 列記하게 되므로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續行與否判斷은 本人이 해야 한다. 또한 出願內容의 不備點이 發見되면 補完이 認定된다.

국제출원은 1年 6個月 後에 WIPO에서 一齊히 國際公開된다.

日本이 가맹 후 日本語, 露語등 特殊語出願에 대하여는 英語의 抄譯으로서 공개되므로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일로부터 18개월쯤 되었을 때에 조사보고서와 국제출원의 사본이 보내진다.

지정국의 言語가 국제출원때에 사용된 언어와 다를 경우에는 출원인은 優先日로부터 20개월 이내에 翻譯文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번역문으로써 지정국에서는 國內審査가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國際豫備審査를 받을 수가 있다. 이 制度는 任意的인 것이며 국제조사보고서가 新規性에 관한 특허문헌의 列記에 그치는 것과는 달리 新規性, 進歩性, 産業上의 利用可能性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審査體制가 整備되어 있지 않은 開發途上國의 서비스인 것이다.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來年 4月 以前에 있을 PCT締約國總會에서 出願受理開始日의 결정과 동시에 選定될 것이나 국제조사기

관에 대하여는 우선은 美國特許廳, 西獨特許廳, 蘇聯特許廳 등은 거의 確定的이며 南美系統에서 브라질特許廳, 日本特許廳도 希望을 갖고 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는 英國特許廳이 지정된 公算이 크며 美國도 비준서기탁 때에 留保宣言을 했지만 工業所有權制度를 둘러싼 先後進國關係를 勘案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援助를 積極化함으로써 南北對立問題를 풀어보자는 意圖이다.

한편 유럽諸國이 締結한 EPC는 西獨등 16개국이 가맹하여 6월 1일부터 뮌헨의 유럽특허청에서 출원수리업무를 개시하겠으나 審査官은 가맹 16개국에서 優秀한 심사관이 選拔될 것이며 이들의 構成員으로 미루어 유럽에서 가장 심사가 까다롭다는 서독보다도 그 審査基準이 嚴格할 것이라는 事前評들이다.

EPC출원은 유럽특허청에서 특허가 許與되면 가맹 16개국은 모두 권리로서 登錄이 인정된다. 다만 登錄料 納入이나 그 절차는 출원국에다 맡아야 하며 권리가 발생 후에는 그 나라의 法制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外國에 출원할 때에는 細密히 검토해야 할뿐 아니라 국제화에 對處한 政策的配慮가 時急하다. 이외에도 商標登錄條約(TRT) 등 國際機構와의 문제들은 山積되어 있다.

PCT發効當時인 1월 24일 현재 비준국은 美, 英, 西獨, 佛, 스위스, 브라질, 세네갈, 말라가시, 토고, 中央阿, 말라위, 카메룬, 차드, 가봉, 콩고, 蘇聯 등 16개국이며 이어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도 비준서를 寄託하게 될 것이다.